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6가합26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28 선고 2023나141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6가합2631 판결

전문

원고 1.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이봉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임종헌, 황귀빈

변론 종결 2023. 5. 26.

판결 선고 2023. 7.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87,055,151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20,027,3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95,916,302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37,023,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 11. 28.경부터 인천 서구 F, G 토지들의 일부(이하 'H동 일대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설폐기물 등의 적치물을 보유하며 그 토지들을 점유하여 온 자이다.

2)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원고 신탁'이라 한다),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H동 일대 토지들 중 일부를 소유하였던 자들이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적재물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 가) 아래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들의 소유지분(3/5)을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7. 8. 21. '피고가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들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H동 일대 토지들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적재물 취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1121호).

[표1]

1	인천 서구 J	염전	92,765	54,896
2	인천 서구 K	잡종지	6,942	4,592
3	인천 서구 L	잡종지	2,985	2,503
4	인천 서구 M	제방	1,825	216
5	인천 서구 N	유지	246	83
6	인천 서구 O	잡종지	72,166	43,880
7	인천 서구 P	잡종지	101,794	30,543
합계	278,723	136,713		

나) 인천지방법원은 2009. 6. 9. 피고가 [표1] 적재물 면적란 기재와 같이 적재물을 적치하고, [표1] 순번1 기재 토지 지상에 철제 컨테이너, 공작물 등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I에게 [표1] 기재 구 지번란 토지의 지상 136,713m²에 적치된 재활용골재 등 적재물을 취거하고, [표1] 순번1 기재 토지 지상 5개 부분 면적 합계 276m²에 설치된 철제 컨테이너, 공작물 등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8. 2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79066 판결), 위 판결은 2010. 11. 25. 대법원 2010다7783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부당이득반환 소송 가) I은 2009. 9. 8.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를 포함한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813호).

나) I은 위 소송 진행 중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들의 소유지분(3/5)을 Q조합(이하 'Q조합'이라

한다)에게 이전하고,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Q조합은 위 소송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1. 2. 9. 피고가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 중 합계 136,989m²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Q조합에게 2007. 1. 1.부터 2009. 8. 31.까지의 부당이득금 962,64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9. 9. 1.부터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 중 점유부분 토지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82,78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3.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 및 인천 서구 H동 구 R 제방 1,284m²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지번 변동

[표1] 구 지번란 기재 각 토지 및 인천 서구 H동 구 R 제방 1,284m²는 수차례 분할·합병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번과 면적 등이 변동되었다(이하에서는 인천 서구 H동을 생략하고, 분할·합병 전 지번을 '구 F-O, G-O'이라고 하고, 변론종결일 기준 현재 지번을 '현 F-O, G-O'이라고 하며, 구 지번이 순차 분할된 O, P은 특정을 위해 면적을 표기한다).

1) 구 J 염전 92,765m²

구 J 염전 92,765m²는 2012. 3. 29. 현 J 염전 35,794m²와 현 S 염전 56,971m²로 분할되었다.

2) 구 T 잡종지 6,942m²

구 T 잡종지 6,942m²는 2012. 9. 25. 구 U, 구 V, 구 W, 구 X, 구 Y, 구 Z, 구 AA와 합병되었고, 2018. 10. 4.경 현 AB 잡종지 1,087m²로 일부 분할되어 현 T 잡종지 125,324m²가 되었다.

3) 구 L 잡종지 2,985m²

구 L 잡종지 2,985m²는 2011. 1. 7. 현 L 잡종지 597m², 현 AC 잡종지 1,791m², 현 AD 잡종지 597m²로 분할되었다.

4) 구 M 제방 1,825m²

분할, 합병 등이 없었다. 이하에서는 '현 M'이라고 한다.

5) 구 N 유지 246m²

분할, 합병 등이 없었다. 이하에서는 '현 N'이라고 한다.

6) 구 O 잡종지 72,166m²

구 O 잡종지 72,166m²는 2011. 1. 7. 구 O 잡종지 21,599m², 구 AE 잡종지 20,742m², 구 U 잡종지 29,825m²로 분할되었고, 구 O 잡종지 21,599m²는 2012. 2. 15. 현 O 잡종지 19,586m²와 현 AF 대 2,013m²으로 다시 분할되었고, 구 AE 잡종지 20,742m²는 2012. 3. 29. 현 AE 잡종지 8,818m², 구 Y 잡종지 11,942m²로 분할되었다(이후 구 U 잡종지 29,825m² 및 구 Y 잡종지 11,942m²는 구 T 잡종지에 합병되었다).

7) 구 P 잡종지 101,794m²

구 P 잡종지 101,794m²는 2011. 1. 7. 구 P 잡종지 21,495m², 구 V 잡종지 49,254m², 구 W 잡종지 31,045m²로 분할되었고, 구 P 잡종지 21,495m²는 2018. 7. 6. 현 P 잡종지 10,764m², 현 AG 잡종지 10,731m²로 분할되었다. 구 V 잡종지 49,254m²은 2012. 3. 29. 구 V 24,606m², 현 AH 잡종지 523m², 구 Z 잡종지 21,060m², 현 AI 잡종지 3,065m²로 분할되었다(이후 구 V, 구 Z는 구 T 잡종지에 합병되었다).

8) 구 R 제방 1,284m²

구 R 제방 1,284m²는 2011. 1. 7. 현 R 제방 770m², 현 AJ 제방 257m², 현 AK 제방 257m²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들의 H동 일대 토지(이하 구 R 토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할·합병, 매각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및 상실일

1) 원고 신탁의 H동 일대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매각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일 및 상실일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1	구 J	염전	92,765	1/5	2009. 12. 31.	2012. 4. 22.
2	구 T	잡종지	6,942	1/5	2009. 12. 31.	2012. 4. 22.
3	구 L	잡종지	2,985	1/5	2009. 12. 31.	2011. 1. 6.
4	현 L	잡종지	597	1/5	2011. 1. 7.	2017. 6. 11.
5	현 AC	잡종지	1,791	1/5	2011. 1. 7.	2017. 6. 11.
6	현 AD	잡종지	597	1/51(2017. 6. 12.부터)	2011. 1. 7.	2022. 8. 28.
7	현 AE	잡종지	8,818	1/51(2012. 4. 23.부터)	2012. 3. 29.	2022. 8. 28.

1	구 J	염전	92,765	1/5	2009. 12. 31.	2012. 4. 22.
8	구 AE	잡종지	20,742	1/5	2011. 1. 7.	2012. 3. 28.
9	구 U	잡종지	29,825	1/5	2011. 1. 7.	2012. 4. 22.
10	구 Y	잡종지	11,924	1/5	2012. 3. 29.	2012. 4. 22.
11	현 AH	잡종지	523	1/51(2012. 4. 23.부터)	2012. 3. 29.	2022. 8. 28.
12	현 AI	잡종지	3,065	1/51(2012. 4. 23.부터)	2012. 3. 29.	2022. 8. 28.
13	구 O	잡종지	72,166	1/5	2009. 12. 31.	2011. 1. 6.
14	현 O	잡종지	19,586	1/51(2012. 4. 23.부터)	2012. 2. 15.	2022. 8. 28.
15	구 P	잡종지	101,794	1/5	2009. 12. 31.	2011. 1. 6.
16	구 V	잡종지	49,524	1/5	2011. 1. 7.	2012. 4. 22.
17	구 W	잡종지	31,045	1/5	2011. 1. 7.	2012. 4. 22.
18	현 P	잡종지	10,764	1	2018. 7. 6.	2022. 8. 28.
19	현 AG	잡종지	10,731	1	2018. 7. 6.	2022. 8. 28.
20	현 M	제방	1,825	1/5	2009. 12. 31.	2022. 8. 28.
21	현 N	유지	246	1/5	2009. 12. 31.	2022. 8. 28.
22	구 R	제방	1,284	1/5	2009. 12. 31.	2011. 1. 6.
23	현 R	제방	770	1/5	2011. 1. 7.	2022. 8. 28.
24	현 AJ	제방	257	1/5	2011. 1. 7.	2022. 8. 28.
25	현 AK	제방	257	1/5	2011. 1. 7.	2022. 8. 28.

2) 원고 C의 H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 및 상실일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1	현 J	염전	35,794	306.2/35794	2015. 3. 5.	2022. 11. 10.
2	현 T	잡종지	125,324	949/126411	2015. 3. 5.	2022. 11.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이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참조).

2) 원고 신탁이 [표2] 기재와 같이 H동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 원고 C이 [표3] 기재와 같이 H동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다.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토지들의 일부에 적재물 등을 적치하며 위 토지들 중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H동 일대 토지 중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관한 토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Q조합에게 2007. 1. 1.부터 2009. 8. 31.까지의 부당이득금 962,64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9. 9.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82,784원을 지급하라는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원고들은 Q조합으로부터 위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목적물이었던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H동 일대 토지는 소송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H동 일대 토지의 전 소유자인 Q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들도 자신들의 토지에 쌓여있는 적재물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적재물 적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구체적 판단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인천광역시로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국토계획법에 따른 적재물 처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국토계획법령상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적재물 처리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불과하며 대등한 사경제주체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합의, 화해계약 성립으로 인한 권원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Q조합과 원고들, 피고, AL, AM 등은 2012. 2. 29.에 H동 일대에 관한 분할합의를 하였는데, 위 분할합의는 피고의 H동 일대 토지에 대한 적재물 점유행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 내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합의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취거의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1. 9. 및 2011. 12. 12. 구 J, 구 T, 구 O, 구 P, 구 AE, 구 U, 구 V, 구 W, 구 X 각 토지 중 AN이 소유하던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2012. 2.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H동 일대 토지들1)을 공유하던 Q조합, 원고 신탁, 피고, AL, AM는 2012. 2.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유물 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공유물 분할 합의서〉

Q조합, 원고 신탁(수익자: AO 주식회사, 원고 C, AP), AN(매수인 피고), AL, AM는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는 공유자인 Q조합, 원고 신탁(수익자: AO 주식회사, 원고 C, AP), AN(매수인 피고), AL, AM 등 당사자들이 공동소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당사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면적을 분할한다.

제4조(분할의 절차 및 비용부담)

② 공유물분할 대상 토지의 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추후 처리비용 및 제1항에 따라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본 공유물분할에 합의하기로 한 공유자들의 각자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적재물 전체처리비용 및 분할비용에 대하여 Q조합은 60%, 원고 신탁은 20%, AN(매수인 피고)은 17%, AL, AM는 3%를 부담하기로 한다(다만 AL, AM가 부담하여야 할 적재물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적재물 처리 행위 일체에 대하여 위임받은 Q조합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유보사항)

① 본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들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합의서의 일부를 이룬다.

(3)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원고 신탁은 2012. 4. 23. 현 AE 잡종지 8,818㎡, 현 AH 잡종지 523㎡, 현 AI 잡종지 3,065㎡, 현 O 잡종지 19,586㎡, 구 P 잡종지 21,495㎡ 등을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피고는 현 S 염전 56,971㎡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Q조합, 원고 신탁, 피고, AL, AM가 2012. 2. 29.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분할대상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 전부를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중 63%를 Q조합이, 20%를 원고 신탁이, 17%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위 약정은 공유물분할의 부수적 약정으로서 공유 토지 위에 피고, 주식회사 BA 등이 적치한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자들 각각이 공유지분과 같은 비율로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그 문언과 규정을 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Q조합, 원고 신탁, 피고가 각각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단독 소유로 된 토지(Q조합의 경우에는 AL과 AM 단독 소유로 된 토지 포함)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 전부를 처리한 다음, 그 전부를 처리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하여 그 총액의 63%를 Q조합이, 20%를 원고 신탁이, 17%를 피고가 각 부담하되, 각각이 지출한 비용이 각각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로부터 초과지출금액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Q조합, 원고 신탁, 피고, AL, AM가 공유하던 H동 일대 토지 중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원고 신탁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들 위에 있는 적재물에 대하여는 원고 신탁이, Q조합, AL, AM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들 위에 있는 적재물에 대하여는 Q조합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에 대하여는 피고가 각 취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신탁이 피고 등과 공유물분할 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에 대하여는 원고 신탁이 이를 취거하기로 약정한 이상, 설령 원고 신탁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위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더라도, 원고 신탁은 이를 취거할 의무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 신탁이 2012. 4. 23.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현 AE, 현 AH, 현 AI, 현 O, 구 P 잡종지 21,495m²(위 토지에서 분할된 현 AG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의가 이 사건 분할합의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면제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합의서에 원고 신탁 등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포기·면제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합의 작성 당시 이미 발생한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무까지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화해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C이 원고 신탁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분할합의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분할합의의 문언,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이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적재물 취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분할합의의 당사자가 원고 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신탁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956호)를 제기하였고, 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신탁이 이 사건 분할합의의 당사자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신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범위

1) 구 J 염전 92,765m²: 전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2. 4. 22.까지 구 J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2,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1. 1. 19.까지 구 J의 55,172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점, 구 J에서 분할된 현 J에 피고의 적재물이 22,338m²나 적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956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H동 일대 토지 중 피고 자신의 소유인 현 S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일부만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H동 일대 토지 중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J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2. 4. 22.까지 구 J의 55,172m²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2. 4. 22.까지 구 J의 55,172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BC에 대한 임료감정축탁 결과(이하 '임료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구 J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54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760원, 2011. 12. 31. ~ 2012.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구 J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45,997,774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구 T 잡종지 6,942m²: 전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2. 4. 22.까지 구 T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2,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T의 4,592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점, 구 T와 다른 토지들이 합병된 현 T에 피고의 적재물이 72,534m²'나 적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956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H동 일대 토지 중 피고 자신의 소유인 현 S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일부만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H동 일대 토지 중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T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2. 4. 22.까지 구 T의 4,592m²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2. 4. 22.까지 구 T의 4,592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구 T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48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680원, 2011. 12. 31. ~ 2012.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1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구 T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2,000,025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구 L 잡종지 2,985m²: 일부 인용2)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L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L의 2,503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점, 구 L은 2011. 1. 7. 현 L, 현 AC, 현 AD로 분할되었는데, 2010. 10. 18.을 기준으로 분할된 현 L, 현 AC, 현 AD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의 적재물의 합계가 2,861m²로 과거보다 증가한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L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L의 2,503m²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L의 2,503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구 L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52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1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구 L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2,822,643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현 L 잡종지 597m²: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L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L의 497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L 지상 497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현 L 지상에 동일한 양의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현 L은 구 L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2018. 10. 18.을 기준으로 구 L에서 분할된 현 L, 현 AC, 현 AD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 면적의 합계는 2,861m²으로, 구 L에 적치되어 있던 적재물의 면적(2,503m²)보다 증가한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L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L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2,503m²)은 분할된 토지에 계속하여 남아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L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2,503m²가 현 L, 현 AC, 현 AD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과거에도 현재 현 L, 현 AC, 현 AD에 각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L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의 면적은 434.80m²(=497m² × 2,503/2,861,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L의 434.80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L의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740원, 2011. 12. 31. ~ 2012.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180원, 2012. 12. 31. ~ 2013.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40원, 2013. 12. 31. ~ 2014.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20원, 2014. 12. 31. ~ 2015.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80원, 2015. 12. 31. ~ 2016.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440원, 2016. 12. 31. ~ 2017.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7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L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3,478,386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현 AC 잡종지 1,791m²: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AC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AC의 1,767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AC 지상 1,767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현 AC 지상에 동일한 양의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현 AC은 구 L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2018. 10. 18.을 기준으로, 구 L에서 분할된 현 L, 현 AC, 현 AD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 면적의 합계는 2,861m²으로, 구 L에 적치되어 있던 적재물의 면적(2,503m²)보다 증가한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L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L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2,503m²)은 분할된 토지에 계속하여 남아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L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2,503m²가 현 L, 현 AC, 현 AD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과거에도 현재 현 L, 현 AC, 현 AD에 각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AC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의 면적은 1,545.89m²(=1,767m² × 2,503/2,861)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 현 AC의 1,545.89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L의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740원, 2011. 12. 31. ~ 2012.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180원, 2012. 12. 31. ~ 2013.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40원, 2013. 12. 31. ~ 2014.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20원, 2014. 12. 31. ~ 2015.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80원, 2015. 12. 31. ~ 2016.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440원, 2016. 12. 31. ~ 2017.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74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 AC은 구 L에서 현 L과 함께 분할된 토지로서 양 토지가 인접해있고 지목이 동일하므로 현 AC의 임료도 현 L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AC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2,367,069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현 AD 잡종지 $597m^2$: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7. 6. 11.까지는 현 AD의 1/5 지분을, 2017. 6. 12.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AD의 전체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AD의 $597m^2$ 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AD 지상 $597m^2$ 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AD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피고가 현 AD 지상 $597m^2$ 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현 AD 지상에 동일한 양의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현 AD은 구 L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2018. 10. 18.을 기준으로, 구 L에서 분할된 현 L, 현 AC, 현 AD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 면적의 합계는 $2,861m^2$ 으로, 구 L에 적치되어 있던 적재물의 면적($2,503m^2$)보다 증가한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L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L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2,503m^2$)은 적어도 법원감정일(2018. 10. 18.) 이전까지는 분할된 토지에 계속하여 남아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L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2,503m^2$ 가 현 L, 현 AC, 현 AD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과거에도 현재 현 L, 현 AC, 현 AD이 각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2011. 1. 7.부터 2018. 10. 17.까지 현 AD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의 면적은 $522.29\text{m}^2 (= 597\text{m}^2 \times 2,503/2,861)$ 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현 AD에 관하여 2011. 1. 7.부터 2018. 10. 17.까지는 522.29m^2 를,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597m^2 를 각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L의 2010. 12. 31. ~ 2011.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5,740원, 2011. 12. 31. ~ 2012.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180원, 2012. 12. 31. ~ 2013.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240원, 2013. 12. 31. ~ 2014.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220원, 2014. 12. 31. ~ 2015.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280원, 2015. 12. 31. ~ 2016.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440원, 2016. 12. 31. ~ 2017.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740원, 2017. 12. 31. ~ 2018. 12. 30. m^2 당 연 임료는 6,9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92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되는데, 현 AD은 구 L에서 현 L과 함께 분할된 토지로서 양 토지가 인접해있고 지목이 동일하므로 현 AD의 임료도 현 L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AD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24,978,338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현 AE 잡종지 $8,818\text{m}^2$: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는 현 AE의 $1/5$ 지분을,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AE의 전체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2. 3. 29.부터 2022. 8. 28.까지 현 AE의 $5,965\text{m}^2$ 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2.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탁은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현 AE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단독소유가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은 원고 신탁이 취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현 AE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23.부터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AE에 관한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현 AE의 5,965m²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E 지상 5,965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5,965m² 보다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O 잡종지 72,166m²의 43,880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구 O 잡종지 72,166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m²가 분할된 개별 토지들(구 O 잡종지 21,599m², 구 AE, 구 U)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현 O의 공부상 면적은 19,586m²이고, 현 AE의 공부상 면적은 8,818m²인데,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O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450m²이고, 현 AE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965m²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O 잡종지 72,166m²에 적치되어 있던 43,880m²의 적재물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 O 잡종지 72,166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을 분할된 토지들(구 O 잡종지 21,599m², 구 AE, 구 U)의 면적에 비례하여 임의로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현 AE의 5,965m²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AE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8) 구 AE 잡종지 20,742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2. 3. 28.까지 구 AE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12. 3. 28.까지 구 AE의 12,589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O 잡종지 72,166m²의 43,880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실, 구 O 잡종지 72,166m²는 2011. 1. 7. 구 O 잡종지 21,599m², 구 AE, 구 U으로 각 분할된 사실, 구 AE는 2012. 3. 29. 현 AE와 구 Y으로 다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O 잡종지 72,166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m²가 분할된 토지들(구 O 잡종지 21,599m², 구 AE, 구 U)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현 AE에 있는 피고의 적재물(5,965m²)과 과거에 구 AE에 있었던 피고의 적재물의 양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신탁이 주장하는 피고 적재물 면적 12,589m²는 구 O 잡종지 72,166m²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m²를 분할된 토지들의 면적에 비례하여 나눈 값에 해당하는데, 구 O 잡종지 72,166m²에서 순차 분할된 현 O의 공부상 면적은 19,586m²이고, 같이 순차 분할된 현 AE의 공부상 면적은 8,818m²임에 반하여,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O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450m²이고, 현 AE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965m²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O 잡종지 72,166m²에 적치되어 있던 43,880m²의 적재물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3. 28.까지 구 AE의 12,589m²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AE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9) 구 U 잡종지 29,825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U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U의 3,620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O 잡종지 72,166㎡ 중 43,8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실, 구 O 잡종지 72,166㎡'는 2011. 1. 7.경 구 O 잡종지 21,599㎡, 구 AE, 구 U으로 각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가 분할된 토지들(구 O 잡종지 21,599㎡, 구 AE, 구 U)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원고 신탁이 주장하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 3,620㎡는 구 O 잡종지 72,166㎡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를 분할된 토지들의 면적에 비례하여 나눈 값에 해당하는데, 구 O 잡종지 72,166㎡에서 순차 분할된 현 O의 공부상 면적은 19,586㎡이고, 같이 순차 분할된 현 AE의 공부상 면적은 8,818㎡임에 반하여,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O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450㎡이고, 현 AE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96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던 43,880㎡의 적재물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U의 3,620㎡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U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0) 구 Y 잡종지 11,924㎡: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구 Y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구 Y의 7,237㎡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O 잡종지 72,166㎡의 43,8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실, 구 O 잡종지 72,166㎡은 2011. 1. 7.경 구 O 잡종지 21,599㎡, 구 AE, 구 U으로 각 분할된 사실, 구 AE는 2012. 3. 29. 현 AE, 구 Y으로 다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가 분할된 토지들(구 O 잡종지 21,599㎡, 구 AE, 구 U)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원고 신탁이 주장하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 7,237㎡는 구 O 잡종지 72,166㎡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를 분할된 토지들의 면적에 비례하여 나눈 값에 해당하는데, 구 O 잡종지 72,166㎡에서 순차 분할된 현 O의 공부상 면적은 19,586㎡이고, 현 AE의 공부상 면적은 8,818㎡임에 반하여,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O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450㎡이고, 현 AE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96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던 43,880㎡의 적재물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구 Y의 7,237㎡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Y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1) 현 AH 잡종지 523㎡: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는 현 AH의 1/5 지분을,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AH의 전체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2. 3. 29.부터 2022. 8. 28.까지 현 AH의 523㎡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2.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탁은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현 AH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단독소유가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은 원고 신탁이 취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현 AH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23.부터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AH에 관한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현 AH의 523㎡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H 지상 523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현 AH와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523m² 보다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현 AH은 구 P 잡종지 101,794m²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P 잡종지 101,794m² 중 30,543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m²가 분할된 토지들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지상에 균등하게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기초로 현 AH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현 AH의 523m²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AH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2) 현 AI 잡종지 3,065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는 현 AI의 1/5 지분을,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AI의 전체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2. 3. 29.부터 2022. 8. 28.까지 현 AI 중 3,065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2.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탁은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현 AI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단독소유가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은 원고 신탁이 취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현 AI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23.부터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AI에 관한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현 AI의 3,065㎡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I 지상 3,065㎡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현 AI과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3,065㎡ 보다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현 AI은 구 P 잡종지 101,794㎡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P 잡종지 101,794㎡ 중 30,543㎡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구 P 잡종지 101,794㎡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가 분할된 토지들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구 P 잡종지 101,794㎡의 지상에 균등하게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을 기초로 현 AI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현 AI의 3,065㎡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AI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3) 구 O 잡종지 72,166㎡: 전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O 잡종지 72,166㎡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2,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O 잡종지 72,166㎡ 중 43,8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점, 구 O 잡종지 72,166㎡에서 순차 분할된 현 O과 현 AE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956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H동 일대 토지 중 피고 자신의 소유인 현 S 옆전 56,971㎡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일부만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H동 일대 토지 중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O 잡종지 72,166㎡의 43,880㎡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O 잡종지 72,166㎡ 중 43,880㎡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O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20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현 O은 구 O 잡종지 72,166㎡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현 O의 임료는 구 O 잡종지 72,166㎡의 임료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구 O 잡종지 72,166㎡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46,544,057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다.

14) 구 O 잡종지 21,599㎡ 및 현 O 잡종지 19,586㎡: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2. 2. 15.까지는 구 O 잡종지 21,599㎡의 1/5 지분을, 2012. 2. 16.부터 2012. 4. 22.까지는 현 O의 1/5 지분을,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O의 전체 지분을 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구 O 잡종지 21,599㎡ 및 현 O의 5,450㎡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2.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탁은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현 O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단독소유가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은 원고 신탁이 취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현 O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23.부터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O에 관한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O 잡종지 21,599㎡ 및 현 O의 5,450㎡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O 지상 5,450㎡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구 O 잡종지 21,599㎡와 현 O의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5,450㎡ 보다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현 O은 구 O 잡종지 72,166㎡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인데,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O 잡종지 72,166㎡ 중 43,8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43,880㎡가 분할된 토지들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현 O의 공부상 면적은 19,586㎡이고, 현 AE의 공부상 면적은 8,818㎡인데,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O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450㎡'이고, 현 AE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5,96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던 43,880㎡의 적재물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 O 잡종지 72,166㎡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을 분할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O 잡종지 21,599㎡ 및 현 O의 5,450㎡'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O 잡종지 21,599㎡ 및 현 O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5) 구 P 잡종지 101,794㎡: 전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2,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30,543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점, 구 P 잡종지 101,794m²에서 분할된 현 P와 현 AG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956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H동 일대 토지 중 피고 자신의 소유인 현 S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일부만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H동 일대 토지 중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지상 30,543m²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30,543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P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42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64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현 P은 구 P 잡종지 101,794m²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현 P의 임료는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임료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33,769,345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다.

16) 구 V 잡종지 49,524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V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V 중 2,956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P 잡종지 101,794㎡ 중 30,543㎡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실, 구 P 잡종지 101,794㎡은 2011. 1. 7. 구 P 잡종지 10,764㎡, 구 V, 구 W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P 잡종지 101,794㎡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가 분할된 토지들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원고 신탁이 주장하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 2,956㎡는 구 P 잡종지 101,794㎡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를 분할된 토지들의 면적에 비례하여 나눈 값에 해당하는데, 구 P 잡종지 101,794㎡에서 순차 분할된 현 P의 공부상 면적은 10,764㎡이고, 현 AG의 공부상 면적은 10,731㎡임에 반하여,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P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2,948㎡이고, 현 AE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34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P 잡종지 101,794㎡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V의 2,956㎡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V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7) 구 W 잡종지 31,045㎡: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W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W 중 1,863㎡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P 잡종지 101,794㎡ 중 30,543㎡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실, 구 P 잡종지 101,794㎡은 2011. 1. 7. 구 P 잡종지 10,764㎡, 구 V, 구 W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m²가 분할된 토지들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원고 신탁이 주장하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 1,863m²는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m²를 분할된 토지들의 면적에 비례하여 나눈 값에 해당하는데, 구 P 잡종지 101,794m²에서 순차 분할된 현 P의 공부상 면적은 10,764m²이고, 현 AG의 공부상 면적은 10,731m²임에 반하여,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P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2,948m²이고, 현 AG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340m²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을 분할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W의 1,863m²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W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8) 구 P 잡종지 21,495m² 및 현 P 잡종지 10,764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는 구 P 잡종지 21,495m²의 1/5 지분을, 2012. 4. 23.부터 2018. 7. 5.까지는 구 P 잡종지 21,495m²의 전체 지분을, 2018. 7. 6.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P의 전체 지분을 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18. 7. 5.까지 구 P 잡종지 21,495m² 지상 3,288m²에, 2018. 7. 6.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P 지상 2,948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2.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탁은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구 P 잡종지 21,495m²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단독소유가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은 원고 신탁이 취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구 P 잡종지 21,495m²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23.부터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P 잡종지 21,495m² 및 현 P에 관한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P 잡종지 21,495m²의 3,288m²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P 지상 2,948m²와 현 AG 지상 340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P 잡종지 101,794m²의 30,543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m²가 분할된 토지들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구 P 잡종지 101,794m²에서 순차 분할된 현 P의 공부상 면적은 10,764m²이고, 같이 순차 분할된 현 AG의 공부상 면적은 10,731m²임에 반하여,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P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2,948m²이고, 현 AG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340m²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 P 잡종지 101,794m²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을 분할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2. 4. 22.까지 구 P 잡종지 21,495m²의 3,288m²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P 잡종지 21,495m² 및 현 P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9) 현 AG 잡종지 10,731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8. 7. 6.부터 2022. 8. 28.까지 현 AG의 전체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8. 7. 6.부터 2022. 8. 28.까지 현 AG 지상 340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2.의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탁은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구 P 잡종지 21,495㎡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단독소유가 된 토지 위에 있는 적재물은 원고 신탁이 취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구 P 잡종지 21,495㎡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23.부터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구 P 잡종지 21,495㎡에서 2018. 7. 6. 분할된 토지인 현 AG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현 AG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0) 현 M 제방 1,825㎡: 전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22. 8. 28.까지 현 M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09. 12. 31.부터 2018. 10. 17.까지는 현 M 지상 216㎡에,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M 지상 328㎡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M 지상 328㎡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M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M 지상 328㎡에 적재물을 적치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갑 제2,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현 M의 216㎡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점, 2018. 10. 18.을 기준으로 현 M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의 적재물의 면적이 증가한 점, 피고가 원고 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956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H동 일대 토지 중 피고 자신의 소유인 현 S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일부만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H동 일대 토지 중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현 M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8. 10. 17.까지 현 M 지상 216㎡에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8. 10. 17.까지는 현 M의 216㎡를,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M의 328㎡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M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당 연 임료는 4,08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당 연 임료는 4,240원, 2011. 12. 31. ~ 2012. 12. 30.의 ㎡당 연 임료는 4,560원, 2012. 12. 31. ~ 2013. 12. 30.의 ㎡당 연 임료는 4,600원, 2013. 12. 31. ~ 2014. 12. 30.의 ㎡당 연 임료는 4,580원, 2014. 12. 31. ~ 2015. 12. 30.의 ㎡당 연 임료는 4,640원, 2015. 12. 31. ~ 2016. 12. 30.의 ㎡당 연 임료는 4,740원, 2016. 12. 31. ~ 2017. 12. 30.의 ㎡당 연 임료는 4,980원, 2017. 12. 31. ~ 2018. 12. 30.의 ㎡당 연 임료는 5,1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5,10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M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3,041,735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다.

21) 현 N 유지 246㎡: 전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22. 8. 28.까지 현 N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갑 제2,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현 N의 83㎡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었는바, 이는 2018. 10. 18.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결과인 82㎡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 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956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H동 일대 토지 중 피고 자신의 소유인 현 S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일부만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H동 일대 토지 중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달리 피고가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변론 종결일 이후 현 N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을 취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22. 8. 28.까지 현 N의 82m²에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22. 8. 28.까지 현 M의 82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N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4,38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4,560원, 2011. 12. 31. ~ 2012.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4,900원, 2012. 12. 31. ~ 2013.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4,940원, 2013. 12. 31. ~ 2014.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4,920원, 2014. 12. 31. ~ 2015.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4,980원, 2015. 12. 31. ~ 2016.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100원, 2016. 12. 31. ~ 2017.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340원, 2017. 12. 31. ~ 2018.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5,4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5,48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N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060,642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다.

22) 구 R 제방 1,284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R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R 중 372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구 R에서 분할된 현 R의 24m², 현 AJ의 151m², 현 AK의 197m²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분할 전 토지인 구 R에 현 R, 현 AJ, 현 AK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과 동일한 양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R의 372㎡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구 R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3) 현 R 제방 770㎡: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R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R 중 24㎡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R 지상 24㎡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R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R 지상 24㎡에 적재물을 적치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2018. 10. 18. 이전에도 피고가 현 R의 지상에 동일한 양의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8. 10. 17.까지 현 R의 24㎡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R의 24㎡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R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당 연 임료는 3,4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3,46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R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64,202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4) 현 AJ 제방 257㎡: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AJ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AJ 중 151㎡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AJ 지상 151㎡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AJ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AJ 지상 151㎡에 적재물을 적치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2018. 10. 18. 이전에도 피고가 현 AJ의 지상에 동일한 양의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8. 10. 17.까지 현 AJ의 151㎡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AJ의 151㎡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J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당 연 임료는 3,4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3,46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AJ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403,940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5) 현 AK 제방 257㎡: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AK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AK 중 197㎡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AK 지상 197㎡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AK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AK 지상 197㎡에 적재물을 적치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2018. 10. 18. 이전에도 피고가 현 AK의 지상에 동일한 양의 적재물을 적치해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1. 1. 7.부터 2018. 10. 17.까지 현 AK의 197㎡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AK의 197㎡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K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당 연 임료는 3,4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3,46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AK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526,995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6) 소결 원고 신탁의 피고에 대한 H동 일대 토지의 점유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아래 [표4] 인용금액란 기재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신탁에게 부당이득금의 합계인 287,055,1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탁이 구하는 2023. 5.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4]

1	구 J	145,997,774	145,997,774
2	구 T	12,000,025	12,000,025
3	구 L	2,829,410	2,822,643
4	현 L	3,975,984	3,478,386
5	현 AC	14,135,942	12,367,069
6	현 AD	25,873,241	24,978,338
7	현 AE	400,220,104	0
8	구 AE	9,756,837	0

1	구 J	145,997,774	145,997,774
9	구 U	25,873,283	0
10	구 Y	587,271	0
11	현 AH	30,480,495	0
12	현 AI	210,202,190	0
13	구 O 잡종지 72,166m ²	46,544,057	46,544,057
14	구 O 잡종지 21,599m ² 및 현 O	365,655,610	0
15	구 P 잡종지 101,794m ²	33,769,345	33,769,345
16	구 V	21,947,897	0
17	구 W	13,833,851	0
18	구 P 잡종지 21,495m ² 및 현 P	216,392,174	0
19	현 AG	8,699,678	0
20	현 M	3,041,735	3,041,735
21	현 N	1,060,642	1,060,642
22	구 R	209,453	0
23	현 R	182,536	64,202
24	현 AJ	1,148,454	403,940
25	현 AK	1,498,314	526,995
합계	1,595,916,302	287,055,151	

라.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범위

1) 현 J 염전 35,794m² 가) 원고 C이 2015. 3. 5.부터 2022. 11. 10.까지 현 J의 306.2/35,794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C은 2015. 3. 5.부터 2022. 11. 10.까지 현 J 중 22,338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J 지상 22,338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J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11. 10.까지

현 J 지상 22,338m²에 적재물을 적치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현 J의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C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22,338m² 보다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J의 지상 54,896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구 J에서 분할된 현 J와 현 S에 각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개별 면적을 알 수 있어야 구 J에 있던 피고의 적재물 54,896m²이 분할된 토지들에 각 얼마만큼 적치되어 있었는지 계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 3. 5.부터 2018. 10. 17.까지 현 J의 22,338m²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11. 10.까지 현 J의 22,338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C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J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4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44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C에게 현 J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5,006,782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2]와 같다. 따라서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현 T 잡종지 125,324m² 가) 원고 C이 2015. 3. 5.부터 2022. 11. 10.까지 현 T의 949/126,411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C은 2015. 3. 5.부터 2022. 11. 10.까지 현 T 중 72,534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T 지상 72,534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T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11. 10.까지 현 T 지상 72,534m²에 적재물을 적치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현 T의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C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72,534m² 보다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T의 지상 4,592m²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현 T는 구 T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합병되고 분할된 토지이므로,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현 T에 적치되어 있던 적재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 3. 5.부터 2018. 10. 17.까지 현 T의 72,534m²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11. 10.까지 현 T의 72,534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C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T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7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78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C에게 현 T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5,020,571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2]와 같다. 따라서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H동 일대 토지의 점유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아래 [표5] 인용금액란 기재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부당이득금의 합계인 20,027,3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2023. 5.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5]

1	현 J	9,257,945	5,006,782
2	현 T	27,765,495	15,020,571
합계	37,023,440	20,027,35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후

판사오승준

판사인자한

별지

1) 구 J, 구 T, 구 AQ, 구 O, 구 AE, 구 U, 구 AR. 구 P, 구 V, 구 W, 구 AS, 구 AT, 구 AU, 구 AV, 구 AW, 구 AA, 구 X, 구 AX, 구 AY, 구 AZ

2) 피고 점유면적은 2,503㎡'인데, 원고 신탁은 피고 점유면적을 2,509㎡'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